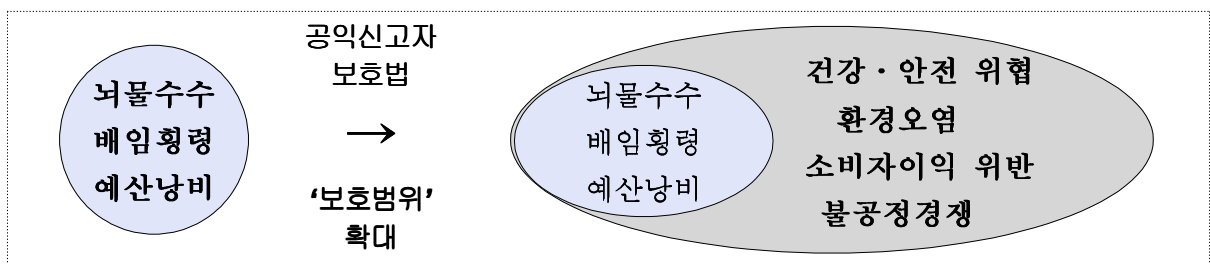
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및 보호법령 개정 내용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

□ 취지 및 기대효과

- 건강·안전·환경·소비자이익·공정경쟁 위협행위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도록 함
-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**민간부문의 공익신고**에 대한 **보호** 가능



-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·확산방지,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고자 보호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권익 제고

□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

- 건강·안전 등과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별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
- 공익신고 대상법률 : 식품위생법, 폐기물관리법, 의료법, 소비자기본법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180개

○ 유형 및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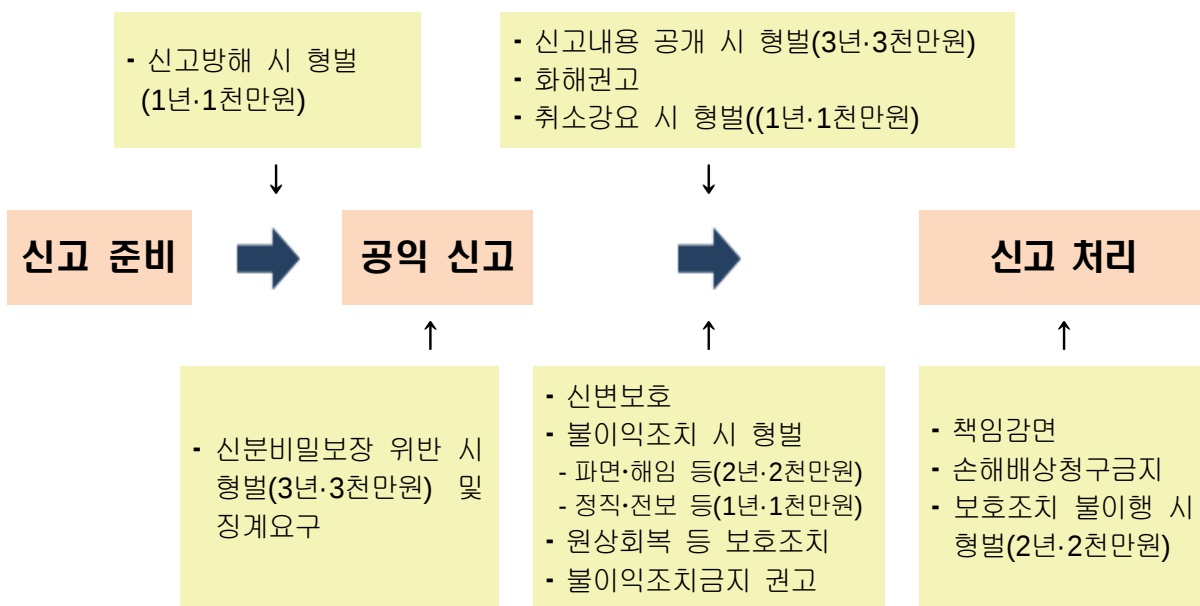
공익침해분야	주요 사례
건강	오염 혈액의 유통,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·판매행위
안전	삼품백화점 붕괴, 철도교량 부실시공, 특정고압가스의 미신고 사용
환경	낙동강 폐놀 유출,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폐수의 불법 유출
소비자이익	가짜 참기름 유통, 각종 허위·과장 광고
공정경쟁	LPG 가격 담합, 유사석유 판매·사용, 무등록자에 대한 건설용역 하도급

□ 공익신고 접수기관
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·기관·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, 소관 행정·감독 기관, 수사기관, 권익위, 국회의원, 관련 공공기관

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

- 보호조치 : 인적사항 공개금지, 신변보호, 각종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등



- 보 상 금 : 벌금·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국가·지자체 수입증대 시 보상

- 지자체 수입증대 시 권익위가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상환

- 구 조 금 : 치료·쟁송·임금손실 등 피해비용 발생 시 구조금 지급

국가공무원등의 정치운동등 지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
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

□ **추진 배경**

- 정치관여지시에 대한 국가공무원등의 **이의제기**, 직무집행 거부 및 수사기관 신고 등을 규정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·시행(2014.1.14.)
 -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중
- ※ VIP 당부말씀 : “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”(2014.2.4. 국무회의)

□ **정치운동 등 지시 관련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시행령(안)**

○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(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)

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(「국가정보원직원법」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국가공무원 등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.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
 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
 - 3. 「군형법」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
-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,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127조 및 「군형법」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[본조신설 2014.1.14.]

○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2(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)(안)

-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정치운동등”이라 한다)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 - 1.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
 - 2.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
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.
 - 1.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, 소속, 직위 등 인적사항
 - 2.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, 소속, 직위 등 인적사항
 - 3.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
 - 4.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
 - 5.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
-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

공익침해행위,
안심하고 상담하세요.
110



안심하세요.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
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.

- 보호 조치 : 신분비밀보장, 신분보호,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
- 보상 지원 :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
- 법적 책임 감면 :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
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
형벌·징계의 감면



공익침해행위란?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불량식품 제조·유통, 폐기물 불법 매립, 가짜 냉매가스 판매, 의약품 리베이트, 가격 담합 행위 등



국민권익위원회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homepage : www.acrc.go.kr

공익신고 방법은?

온라인신고

국민 신문고
<http://1398.acrc.go.kr/>

공사 홈페이지
[http://www.jpdc.co.kr/
intro/ethics/ethics](http://www.jpdc.co.kr/intro/ethics/ethics)

오프라인신고(우편, 팩스, 방문)

- 소관 행정 감독기관, 수사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, 국회의원
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
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